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46호

「치과의사전문회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」 제20조에 따른
「수련치과병원지정 및 치과의사전공회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의
위탁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46호, 2024. 7. 19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
령합니다.

2024년 7월 19일

보건복지부장관

「수련치과병원지정 및 치과의사전공회의 정원책정을 위한
자료조사업무의 위탁」 일부개정

수련치과병원지정 및 치과의사전공회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
의 위탁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"2020년 7월 1일"을 "2024년 7월 1일"로 한다.

부 칙 <제2024-146호, 2024. 7. 19.>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재검토기한) 보건복지부장 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 ·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정」에 따라 <u>2020년 7월 1</u> <u>일을</u>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 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3조(재검토기한)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4년 7월 1</u> <u>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